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



2023년 3월 14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04 호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근무시간)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(1일 8시간, 주 40시간)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업무 형편상 필요에 의해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사업 운영 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대 근무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. 또한,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,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. 단,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 경 영 지 원 부 장 곽 성 우
자	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 현 진 환 (3 9 0 - 7 6 0 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근무시간)</p> <p>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(1일 8시간, 주 40시간)을 준수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사업운영 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대 근무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.</u> 단,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 한도내에서 행한다.</p>	<p>제17조(근무시간)</p> <p>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다만, 업무 형편상 필요에 의해 소정의 근무시간 외에 연장·야간·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사업 운영 시간의 범위 안에서 교대 근무하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다.</u> 또한, 강제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,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지 못한다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